2026년 3월~10월 안 전 교 육 실 시 현 황

어린이집명 : 안암어린이집

구분	반	교육일자(필수)	교육 시간	교육아동수(선택)	비고*
성폭력 예방교육	바다소리반	3/30,6/29,10/26	4시간	6,6,6	*6개월에 1회 이상 (연간 4시간 이상)*
	맑은샘물반	3/30,6/29,10/26	4시간	10,10,10	
	새싹풀잎반	3/30,6/29,10/26	4시간	4,5,9	
	초록반	3/30,6/29,10/26	4시간	13,13,14	
	구름반	5/4,6/8,6/29,10/26	4시간	12,12,12,12	
	소나무반	5/4,6/8,6/29,10/26	4시간	19,18,18,18	
아동학대 예방교육	바다소리반	5/6,8/24	4시간	6,6	*6개월에 1회 이상 (연간 4시간 이상)*
	맑은샘물반	5/6,8/24	4시간	9,10	
	새싹풀잎반	5/6,8/24	4시간	4,5	
	초록반	5/6,8/24	4시간	14,13	
	구름반	4/27,8/18	4시간	12,12	
	소나무반	4/27,8/18	4시간	19,18	
실종·유괴의 예방·방지교육	바다소리반	3/9,4/27,6/1,7/27,8/31,10/6	10시간	6,6,6,6,6,6	*3개월에 1회 이상 (연간 10시간 이상)*
	맑은샘물반	3/9,4/27,6/1,7/27,8/31,10/6	10시간	10,10,9,10,10,10	
	새싹풀잎반	3/9,4/27,6/1,7/27,8/31,10/6	10시간	4,4,4,5,5,5	
	초록반	3/9,4/27,6/1,7/27,8/31,10/6	10시간	13,14,13,13,13,12	
	구름반	3/16,5/11,6/1,8/10,8/31,10/12	10시간	12,12,12,12,12,12	
	소나무반	3/16,5/11,6/1,8/10,8/31,10/12	10시간	19,18,18,18,18,18	
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 · 남용 예방 교육	바다소리반	3/16,4/20,5/11,8/3,9/7,10/12	10시간	6,6,6,6,6,6	*3개월에 1회 이상 (연간 10시간 이상)*
	맑은샘물반	3/16,4/20,5/11,8/3,9/7,10/12	10시간	10,10,9,10,10,10	
	새싹풀잎반	3/16,4/20,5/11,8/3,9/7,10/12	10시간	4,4,4,5,5,5	
	초록반	3/16,4/20,5/11,8/3,9/7,10/12	10시간	13,13,14,13,11,12	
	구름반	3/30,5/26,6/15,7/6,9/28,10/19	10시간	12,12,12,12,13,12	
	소나무반	3/30,5/26,6/15,7/6,9/28,10/19	10시간	19,18,18,18,18,18	

재난대비 안전 교육	바다소리반	4/6,7/20,8/18,9/14	6시간	6,6,6,6	*6개월에 1회 이상 (연간 6시간 이상)*
	맑은샘물반	4/6,7/20,8/18,9/14	6시간	10,10,10,10	
	새싹풀잎반	4/6,7/20,8/18,9/14	6시간	4,5,5,5	
	초록반	4/6,7/20,8/18,9/14	6시간	13,13,13,11	
	구름반	3/23,4/20,8/3,9/21	6시간	12,12,12,13	
	소나무반	3/23,4/20,8/3,9/21	6시간	19,19,18,18	
교통안전 교육	바다소리반	3/23,4/13,5/18,6/15,7/6,8/10,9/21,10/19	10시간	6,6,6,6,6,6,6	*2개월에 1회 이상 (연간 10시간 이상)*
	맑은샘물반	3/23,4/13,5/18,6/15,7/6,8/10,9/21,10/19	10시간	10,10,9,9,10,10,10	
	새싹풀잎반	3/23,4/13,5/18,6/15,7/6,8/10,9/21,10/19	10시간	4,4,4,4,5,5,9	
	초록반	3/23,4/13,5/18,6/15,7/6,8/10,9/21,10/19	10시간	13,13,14,13,13,11,14	
	구름반	3/9,4/13,5/18,6/22,7/20,8/25,9/7,10/6	10시간	12,12,12,12,12,12,13,12	
	소나무반	3/9,4/13,5/18,6/22,7/20,8/25,9/7,10/6	10시간	19,19,18,18,18,18,18,18	

* 아동복지법 제31조(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)에 의거 의무 교육 기준

※ 필요시 행을 추가하여 작성